

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재정운영 비교* : 세출결산을 중심으로

민 윤 정**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생(석사과정)

주 철 안***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국·공립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세출결산자료를 토대로 세출 항목별 구성비와 학교운영비 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여 학교급간의 차이를 살피고, 교육과정지원의 측면에서 특수학교의 재정운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공립특수학교의 세출 항목별 평균지출액, 평균구성비, 학생1인당 평균지출액을 산출하여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의 재정운영현황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특수학교의 세출 항목별 구성비는 일반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인건비, 학교운영비가 높았고, 수익자부담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운영비 항목별 구성비는 공통운영비가 높았고, 교수학습활동비와 시설비가 낮았다. 2009년 국·공립학교의 평균세출총액은 1,477,513천원으로, 인건비는 541,944천원, 학교운영비는 999,324천원, 수익자부담교육비는 58,241천원, 예비비는 615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주제어 : 특수교육재정, 학교회계제도, 교육비차이도, 수직적공평성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minlife0702@naver.com)

*** 교신저자(cajoo@pusan.ac.kr)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 제정된 이래 특수학교 신설 및 확장,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및 확장, 특수교사 인원 확보,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 확대, 특수교육비의 점진적 확대라는 관목할 성과를 이루어내며 특수교육의 기반을 형성하였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특수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2조)”이다. 여기서 특수교육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합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2조 2항)”. 동 법에 따라 특수교육은 더 이상 진흥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의 마땅한 권리요 의무임을 공인하였으며 장애인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개별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지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교육평등적 관점에 근거하여 논의가 되는데, 첫째 교육에의 접근을 가능케하는 교육기회의 평등과 둘째 교육환경에서의 교육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평등이다. 이 때 교육기회의 평등은 소극적 평등인 반면에 교육과정의 평등은 적극적 평등으로 논의된다.

오늘날 교육평등의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소극적, 무차별적 평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혜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적성, 개성, 능력 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장애인의 교육평등은 교육기회와 과정에서 모든 학생을 동일선상에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장애, 적성, 개성, 능력 등에 맞추어 최대가능성을 찾고 지원해주어 궁극적으로 성취수준의 평등에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되 장애로 인한 성취수준의 차이를 보상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통하여 국민기초교육수준이 요구하는 최소수준이상의 교육성취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혜영(2005)은 장애인의 교육평등을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과정의 평등으로 살펴보았는데, 교육기회의 평등은 입학기회의 보장, 학교접근권, 무상교육권, 교육과정의 평등은 보조적 서비스 제공, 교육과정 관련 자료 제공, 교사의 자질로 설명하였다. 교육과정의 평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조적 서비스는 학습참여의 지원과 특별한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치료교육의 제공을 의미하고, 교육과정 관련 자료는

장애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의 수정과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제공을 의미하며, 교사자질은 전문교사의 배출, 지속적인 현직특수교사 대상 연수실시, 일반교사양성과정에 특수교육관련과목삽입으로 설명된다.

교육기회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3조 1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무상 및 의무교육의 기간을 법적으로 보다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이 입학기회에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동 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제13조)” 규제함으로써 입학기회에서 차별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개별 장애인의 교육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적 평등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무상의무교육 연한이 연장되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성이 높아진 만큼 특수교육을 둘러싼 여러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집단에서는 다른 구성원에 비하여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수업 개선에 대한 요구와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사 집단, 교장 및 교사집단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재정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과정운영 및 교재·교구구입 등 수업운영과 직접 관련된 영역의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단위수업의 질 확보를 위하여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보조 인적자원을 확보하며 치료교육 및 장애개선을 위한 각종 훈련기기, 장애보완 책걸상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정희섭 외, 2006; 노선옥 외, 2008; 김남순, 2004; 이윤수 외, 2003).

본 연구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학교예산회계제도를 근거로 특수학교의 재정운영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세출결산 및 학교운영비의 항목별 구성비를 일반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차이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운영에서 장애학생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특수학교의 재정운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유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의 세출 자료를 근거로 세부 항목별 지출액, 구성비, 1인당지출액의 평균을 산출하여, 국·공립특수학교의 재정지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재정 현황

2009년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모두 150개교로 국립 5개교, 공립 55개교, 사립 90개교이고, 장애영역별로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8개교, 지적장애학교 94개교, 지체장애학교 18개교, 정서장애학교 8개교로 구성되어 있다(<표 1>). 학급 수는 국립 170학급, 공립 1,661학급, 사립 1,806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학생수와 교원의 수는 <표 2>과 같다.

<표 1>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150	12	18	94	18	8
국립	5	1	1	1	1	1
공립	55	2	4	43	5	1
사립	90	9	13	50	12	6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표 2> 특수학교의 학급·학생·교원수

설립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계	3,637	23,606	6,612
국립	170	958	333
공립	1,661	10,641	2,910
사립	1,806	12,007	3,369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상계서

장애학생의 교육평등적 관점에서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재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일반교육환경에서 함께 학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재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예컨대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비용,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설비, 보조 인적자원의 확보 및 교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김남순, 2004).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특수교육비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표 4>에서와 같이 특수교육비총액을 특수교육수혜학생수로 나눈 1인당 특수교육비의 증가에서도 나타난다.

2009년 기준 특수교육비의 예산 총액은 1조 5천 457억원으로서,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특수교육비는 20,559천원이다.

<표 3> 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

(단위 : 천원)

연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특수교육비	비율(%)
2005	27,438,044,595	822,051,094	3.0
2006	29,426,304,000	1,051,284,265	3.6
2007	31,044,748,000	1,145,295,143	3.7
2008	35,897,425,000	1,352,939,269	3.8
2009	38,698,867,000	1,545,753,946	4.0

※ 출처 : 상계서

<표 4>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 천원)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수(명)	1인당 특수교육비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691
2009	1,545,753,946	75,187	20,559

※ 출처 : 전계서

2. 선행연구 고찰

연구를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과정운영 측면에서 교수학습지원과 특수교육재정의 배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주관하는 일체의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장애학생의 궁극적인 교육과정의 평등에 기여하게 되므로,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의 특성을 아는 것은 특수교육의 행·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재정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배분되어진 교육재정의 적정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교육과정에서의 지원 측면을 강조한 연구로 김은주 외(2002)의 장애학생 학업성취 변인연구와 정동영(2008)의 장애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교수지원을 연구를 살펴보았다. 특수교육의 재정배분에 관한 기초연구로는 표준교육비 연구(공은배, 2005), 장애영역에 따른 교육비차이도 연구(권기욱, 2002), 적정특수교육비 산출연구(김남순, 1999)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재정배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교육비와 교육비 차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연구

김은주 외(2002)는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요소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규모, 정규시험 빈도, 학교장의 교과학습 중요성 인식, 숙제/프로젝트를 내주는 빈도, 교직경력과 최종학력, 교사의 수업변인 중·보조교사를 활용한 일대일 학습지도, 학생수, 교사의 수업외 업무, 학부모의 비협조, 자료부족, 시설부족 등이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지능, 부모의 직업 및 학력과 같이 정책적으로 변화할 수 없는 변인들과도 관계가 있지만, 학교차원에서 교사, 학생, 부모의 태도와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교과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면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정동영(2008)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교수방법을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장애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대수준의 교육성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다양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수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차별화된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준비도, 흥미 및 요구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수내용, 교수과정, 교수방법 등을 학생들의 차이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장애학생의 능력, 요구, 관심을 인정하고 그에 적합하게 개별적으로 구성된 교수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최대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실제로 교수과정의 차별화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보조공학기구와 보완 대체의사소통체계의 이용, 다양한 학습전략 이용 등이 포함된다(정동영, 2008). 특히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음성교재, CD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를 도입한 교재 등을 개발·보급해야하고, 다양한 보조 공학기구와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또한 제공하여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장애학생의 교수참여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하는 교수 보조자료인 그림, 도표, 개요 등을 체계적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실제 수업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학교 및 학급의 시설·설비를 개선하고, 보조적 학습 자료를 확충하여야 한다(이윤수 외, 2003).

2) 특수교육 재정배분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 배분에 있어서 공정성이란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 정당한 차이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학교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청일, 2000). 국가가 교육재정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공정성을 소홀히 하고 학생의 학업성적 향상이라는 협의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사회적 취약아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교사는 행·재정적인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최청일, 2000; 주철안, 2004).

특수교육재정은 일반교육재정과 비교하여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김남순, 2004; 김향지, 2000).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및 학급의 세출항목은 일반학교와 같이 일반운영비와 학습 및 복리비로 구성되지만, 장애학생의 장애보완 및 생활지원의 측면에서 학교시설을 새롭게 구비하고, 학습지원의 측면에서 각종 교재·교구구입 및 제작, 교육지원서비스기기(치료교육 및 장애개선을 위한 각종 훈련기기, 장애보완 책걸상 등) 등을 구입하기 위한 부가적 지출을 포함한다.

표준교육비는 단위학교가 표준적인 인적, 물적 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수준의 교육비를 일컫는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할 교구·시설·설비 등 표준 교육조건 충족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의 소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교육비란 교구·시설·설비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최저 소요 경상비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은배 외(2005)는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 교육조건(교직원, 교구·시설·설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표준운영비”로 표준교육비를 정의하고, 표준교수·학습활동경비와 표준공동운영비로 분류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학생의 학습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표준 교수·학습활동경비는 교과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 재량활동경비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편제와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결정된다. 각 교과활동 및 특별활동의 내용, 각 교육내용의 수준, 각 단위 교육내용별 수업시수, 수업운영 및 평가방식 등에 따라 소요교육비가 산출된다.

공은배 외(2005)는 장애유형을 지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 시각장애학교로 나누어 장애영역별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하였고, 학교규모를 12학급, 24학급, 36학급 기준으로 나누어 특수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장애유형별·학교규모별 표준교육비는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유형별·학교규모별 표준교육비 (단위: 천원)

장애유형	규모	교수학습활동경비	공동운영경비	표준교육비
지적장애 학교	12학급	156,680	288,930	445,610
	24학급	253,688	370,117	623,805
	36학급	332,627	472,370	804,997
청각장애 학교	12학급	152,845	288,930	441,775
	24학급	235,444	370,117	605,561
	36학급	315,194	472,370	787,564
시각장애 학교	12학급	218,294	288,930	507,224
	24학급	363,103	370,117	733,220

※ 출처: 공은배 외(2005).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산출연구

교과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공은배 외(2005)는 지적장애학교에서의 표준교과활동 경비를 <표 6>과 같이 추정하였다. 표준교과활동경비는 교구비와 재료비로 구성되며, 교과활동경비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별활동경비와 재량활동경비를 포함시켜 표준교수학습활동경비를 산출한다. 교구비는 92,883천원, 재료비는 34,743천원, 표준교과활동비는 127,627천원, 표준교수학습활동경비는 253,688천원으로 추산하였다.

공은배 외(2005)의 연구는 소모성 교수학습활동경비와 공통운영경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고, 학교단위, 학급단위, 학생단위의 교육비를 분류하여 각각의 소요경비를 책정하였으며, 장애유형을 지적장애, 청각장애 및 시각장애로 나누어 실시한 점은 의의가 있으나 학급당 학생수를 10명으로 가정한 점은 현행 특수교육법이 학급당 학생수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지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기에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표준교육비는 교육재정배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교육재정을 실제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의 특성에 따라 재정배분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가중치부여 및 교육비차이도를 반영하는 다양한 재정배분원칙이 활용되고 있다.

<표 6> 지적장애학교 표준교과활동 경비(24학급 기준)

(단위 : 천원)

교 과	교 구 비	재 료 비	표준교과활동경비
총 계	92,883.90	34,743.6	127,627.5
전교과공통	34,113.7	0.0	34,113.7
국 어	0.0	2,649.0	2,649.0
사 회	0.0	2,493.2	2,493.2
수 학	0.0	4,015.4	4,015.4
과 학	4,661.0	4,331.1	8,992.1
체 육	7,076.2	4,321.2	11,397.4
음악·미술	7,961.8	16,506.9	24,468.7
컴 퓨 터	9,137.5	0.0	9,137.5
직 업	29,933.7	426.8	30,360.5

※ 출처 : 공은배 (2005). 전계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재정 배분의 평등성은 수직적 공평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불균등한 것을 불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선천적인 불균등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유주의적 공평성에 대응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분배과정을 실천한다. 이를 교육재정배분에 적용한 구체적 측정방법으로는,

측정대상을 고려한 교육비차이도에 따른 가중치부여이다. 교육비차이도는 교육재정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개념으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장애학생을 일반교육 학생에 비교하여 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고, 교육서비스는 개별학생의 독특한 상황에 적합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권기욱(2000)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수교육학생의 장애 유형별 교육비차이도를 산출하였는데, 일반교육학생을 기준으로 시각장애 4.70, 청각장애 3.45, 교육가능 지적장애 2.28, 훈련가능 지적장애 2.58, 지체장애 3.0, 정서장애 2.84, 자폐증 3.27, 언어장애 1.79, 학습장애 2.29, 중복장애 2.97로 추정하였다. 특수교육학생의 장애유형별 교육비차이도는 특수교육재정의 분배에 장애유형별 요구되는 교육비를 차별화함으로써, 교육재정 배분에 각 유형별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밀접하게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분배를 가능케 할 수 있다.

3. 학교회계제도의 세출구조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비 등 세입 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하나의 학교예산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또한 교사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재원의 사용목적 및 범위의 구분 없이 학교에서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성삼제, 2002; 한유경, 2002).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학교회계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항에 근거하여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를 통하여 수입과 지출 그리고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등의 일련의 예산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과정과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학교단위경영을 목표로 하는 학교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단위학교는 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을 작성할 때 학생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학생의 학습단계에 따른 학교재정을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주철안, 1999).

본 연구에서는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으로 이어지는 학교회계제도의 예산과정 중에서 결산 과정의 세출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출항목의 과목명과 각 과목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은 <표 7>와 같다.

<표 7> 학교회계제도에서 단위학교의 세출구조

과 목			과 목 내 용
관	항	목	
1.인건비	1.교직원 인건비	교원연구비	중·고·특수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수납하는 학교에서 교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구비로써 기본연구비, 학생지도비, 독서지도비, 중학교 부진학생지도비, 산업체특별학급연구비, 산업체특별학급 강의수당 등
		제수당	중·고·특수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수납하는 학교에서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수당으로 겸직수당, 교육과정운영상 채용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2.기타직 인건비	학교회계 직원보수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수납하는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계약된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
		비정규직 보수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사무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조리종사원, 교육보조원, 차량도우미, 체육코치, 사서, 영양사, 전산보조원, 공익근무요원 등)
		퇴직적립금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의 퇴직에 대비한 적립금
2.학교 운영비	1.학교 운영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에 소요되는 제 경비, 교육과정 중에 발생하는 학생사고에 대한 치료비 또는 보험금, 보건체육비, 학교보건고나리 기준에 의한 각종 검사비, 학생안전공제회비,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냉온정수기 렌탈비, 수질검사비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교수학습 활동비	학습자료구입비, 교구·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각종행사비, 인쇄비, 정보화용품비, 학급운영비, 교재·교구유지·보수비, 기타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제 경비
		공동 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급량비, 운영수당, 차량비, 여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
		업무 추진비	학교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주요사업 또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시설비	학교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건물, 시설물, 대규모 기계장치기구의 신조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 경비

<표 7> 학교회계제도에서 단위학교의 세출구조 (계속)

과 목			과 목 내 용
관	항	목	
3.수익자 부담 경비	1.수익자 부담 경비	현장학습비	현장학습(소풍, 견학, 수학여행, 교류학습 등)을 위한 경비
		학생수련 활동비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 등을 위한 경비
		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포함)와 교직원 급식비 등
		방과후학교 활동비	방과후나 방학중에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졸업앨범을 구매하기 위한 경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각종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경비
		수준별 보충학습비	교과 과외 흡수를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비
		기타수익 부담경비	우유대금, 생활관사용료, 교지구입비, 교과서대금, 유치원종일반 운영, 건강검진료, 스쿨버스이용료 등 기타 수익자가 납부하는 경비
4.예비비	1.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 출처 : 김남순, 김경신(2007). 학교회계제도 도입과 특수학교경영의 자율화 연구. 재인용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학교예산회계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국·공립 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이다. 특수학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전공과를 포괄하는 종합학교로의 특수성이 강하지만 초등학교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다수의 교육비

연구에서 초등학교가 기준점이 되고 있으며,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초등학교와 교육과정운영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 1인당 교육비에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액수 그대로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 세출 및 학교운영비를 하위항목별 지출액 구성비로 비교하여 이를 통해 특수학교의 재정지출에서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련된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특수학교는 설립유형에 따라 국립 5개교, 공립 55개교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장애학교 3개교, 청각장애학교 5개교, 지적장애학교 44개교, 지체장애학교 6개교, 정서장애학교 2개교이다. 신설 1개교(공립 지적장애학교)를 제외하고 최종 59개교를 선정하였다. 일반초등학교는 국·공립특수학교의 소재지를 16개 시·도교육청으로 분류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특수학교수와 대응하여 59개 공립초등학교를 우선표집하였다.

2. 분석 내용

1) 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재정운영 비교

국·공립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재정운영을 세출 및 학교운영비의 항목별 구성비로 비교하였다. 2009년 세출결산자료를 토대로 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세출 및 학교운영비를 단위학교당 항목별 구성비로 산출하였다. 59개교씩 산출된 항목별 구성비를 세출 기준과 학교운영비 기준으로 나누어, SPSS 18.0을 사용하여 학교 유형간 항목별 구성비의 차이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재정운영의 현황을 비교하며 특수학교 재정운영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2)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의 재정지출현황 분석

2009년 세출결산자료를 토대로 국·공립특수학교의 세출 항목별 평균지출액과 평균구성비를 59개의 단위학교별로 산출하고, 각 항목의 지출액을 단위학교당 재학 학생수로 나누어 항목별 학생1인당 지출액을 산출한 후¹⁾, 이를 토대로 평균구성비 및 지출액을 최종 산출하여 2009년의 국·공립특수학교의 재정지출의 현황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학교회계 세출결산자료는 학교정보공시(학교알리미)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1) 학교정보공시에는 유치원 및 전공과 학생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재학학생수는 이보다 20~30여명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분석 결과

1. 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재정운영 비교

1) 세출결산 항목별 구성비 비교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세출결산대비 항목별 구성비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국·공립특수학교의 세출결산대비 항목별 구성비의 평균치는 인건비 28.4%, 학교운영비 67.4%, 수익자부담교육비 4.1% 등으로 나타났고, 일반초등학교는 인건비 12.3%, 학교운영비 59.9%, 수익자부담교육비 27.6% 등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는 학교운영비, 인건비, 수익자부담교육비 순으로, 일반초등학교는 학교운영비, 수익자부담교육비, 인건비 순으로 지출하였다.

<표 8> 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세출결산 항목별 구성비

세출	학교유형	표집수	평균(%)	표준편차	t
1) 인건비	특수학교	59	28.4	.080	13.289***
	일반초등	59	12.3	.046	
2) 학교운영비	특수학교	59	67.4	.093	3.221**
	일반초등	59	59.9	.152	
3) 수익자부담교육비	특수학교	59	4.1	.046	-10.682***
	일반초등	59	27.6	.162	
4) 예비비	특수학교	59	0.0	.002	1.090
	일반초등	59	0.0	.000	

p<0.01, *p<0.001

두 학교 유형간 세출결산 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여 보면 인건비, 수익자부담교육비, 학교운영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인건비는 특수학교의 구성비가 2배 이상 높았고, 수익자부담교육비는 일반초등학교의 구성비가 7배 가량 높았으며 학교운영비는 특수학교의 구성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크게 교직원 인건비와 기타직 인건비로 분류되는데 교직원의 인건비는 국가차원에서 호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교직원의 보수를 제외한 각종 연구비 및

수당을 포함한다. 특수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인건비는 전체 세출구성비의 3.2%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기타직 인건비는 학교회계 직원 및 비정규직의 보수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비용으로 25.2% 가량 차지하고 있다.

일반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으로는 실험실습보조원, 조리종사원, 사서, 체육코치, 교무보조원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 조리종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1~2명으로 소수 인원을 채용하여도 학교전반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특수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으로 학습활동 및 생활기능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장애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차량보조원, 조리종사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학교당 170여명의 장애학생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 및 생활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보조원과 차량보조원 등을 포함한 다수의 보조 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분석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은 특수학교의 재정지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재정 배분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므로, 인건비의 높은 비중은 학생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타 교육활동에 제약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수익자부담교육비는 학교급식이나 특기적성교육, 졸업앨범 등과 같이 교육활동 및 관련 행사에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교육 경비로, 학교회계 예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출이 결정된 과목의 지출액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초등학교와 비교하여 볼 때, 세출대비 수익자부담비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수학교의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에 부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특수학교는 무상교육원칙에 따라 학부모에게 부가적인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학교의 운영비가 충분하게 책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모조차 학생들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의 수익자부담비는 무조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학교회계 예산과정에서 단위학교의 재정 및 교육과정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집행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단위수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운영비 항목별 구성비 비교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학교운영비대비 항목별 구성비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국·공립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대비 항목별 구성비의

평균치는 학생복리비 12.8%, 교수학습활동비 40.0%, 공통운영비 37.4%, 업무추진비 1.8%, 시설비 7.8%로 나타났으며, 일반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복리비 12.7%, 교수학습활동비 44.5%, 공통운영비 28.3%, 업무추진비 2.1%, 시설비 12.1%로 나타났다. 두 유형의 학교 모두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업무추진비 순으로 지출하였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항목마다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사용되었다. 이는 학교 유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 지출은 상호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특수학교와 일반초등학교의 학교운영비 항목별 구성비

학교운영비	학교유형	표집수	평균(%)	표준편차	t
1) 학생복리비	특수학교	59	12.8	.071	.082
	일반초등	59	12.7	.087	
2) 교수학습비	특수학교	59	40.0	.108	-2.338*
	일반초등	59	44.5	.101	
3) 공통운영비	특수학교	59	37.4	.104	5.110***
	일반초등	59	28.3	.086	
4) 업무추진비	특수학교	59	1.8	.016	-1.251
	일반초등	59	2.1	.009	
5) 시설비	특수학교	59	7.8	.060	-2.889**
	일반초등	59	12.1	.097	

*p<0.05, **p<0.01, ***p<0.001

두 학교 유형간 학교운영비의 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면 공통운영비, 시설비, 교수학습활동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공통운영비는 특수학교가 10%가량 일반초등학교에 비하여 높았고, 시설비와 교수학습활동비는 5%가량 일반초등학교가 높게 나타났다.

공통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급량비, 운영수당, 차량비, 여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 일체를 일컫는다. 특수학교의 경우 개별통학이 어려운 장애학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학교에 비하여 차량유지와 관련한 지출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학교의 규모와 재학학생수에 따라 세 대내지 다섯 대 가량의 차량을 운영하므로 이에 따른 특수학교의 지출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통학버스는 장애학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마땅히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특

수학교 재정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며 이 또한 경직성 경비이다. 경직성 경비는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며 무엇보다도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김남순, 김정신, 2007). 특히 차량운영에 관한 제반 지출과목이 공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 수치만으로 볼 때 특수학교에서 소모성 운영비용이 크게 지출되는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소지도 있다.

교수학습활동비는 학습자료구입비, 교구·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각종행사비, 인쇄비, 정보화용품비, 학급운영비, 교재·교구유지·보수비, 기타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제 경비로 구성된다.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음성교재, CD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를 도입한 교재 등을 개발·보급해야하고, 다양한 보조 공학기구와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정동영, 2008). 이를 기반으로 특수학교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단위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에의 교수학습활동비 평균지출액은 403,794천원으로, 세출총액대비 27.2%, 학교운영비대비 40.0%의 구성비를 보였으며, 재학학생수로 나눈 1인당 평균지출액은 2,699천원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개별 장애학생의 요구에 대한 지원의 측면에서 볼 때, 지출된 특수학교의 교수학습활동비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수준인가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의 재정지출현황 분석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의 세출 총액은 평균 1,477,513천원이며, 재학학생은 평균 168명이다.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는 세출대비 인건비 28.4%, 학교운영비 67.4%, 수익자부담교육비 4%순으로 지출하였고, 전체 항목으로 볼 때 교수학습활동비 27.2%, 공통운영비 25.3%, 비정규직보수 20.4%, 학생복리비 8.4%순으로 지출하였으며 세부 항목별 평균지출액, 평균구성비 및 1인당평균지출액은 <표 10>과 같다. 이때 1인당지출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재학학생수'는 정보공시자료에 집계된 2009년 단위특수학교별 초·중·고등학생의 재학학생수로, 정보공시자료에는 유치원 및 전공과 학생의 수가 공식 집계되지 않아 전체 인원수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인당평균지출액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재학한 인원수를 근거로 한 단위특수학교별 1인당평균지출액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산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재정지출의 현황은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의 재정지출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표 10> 2009년 국·공립특수학교의 세출결산서

관	과 목		평균지출액 (원)	평균구성비 (%)	1인당평균지출액 (원)
	항	목			
1.인건비	1.교직원 인건비	교원연구비	27,987,000	1.9	180,000
		제수당	18,246,000	1.3	126,000
	2.기타직 인건비	학교회계 직원보수	48,057,000	2.9	243,000
		비정규직 보수	293,331,000	20.4	1,900,000
		퇴직적립금	31,714,000	1.9	181,000
합계		419,335,000	28.4	2,630,000	
2.학교 운영비	1.학교 운영비	학생복리비	122,609,000	8.4	797,000
		교수학습 활동비	403,794,000	27.2	2,699,000
		공통 운영비	376,942,000	25.3	2,428,000
		업무 추진비	17,791,000	1.2	127,000
		시설비	78,188,000	5.3	533,000
합계		999,324,000	67.4	6,584,000	
3.수익자 부담 경비	1.수익자 부담 경비	현장학습비	2,582,000	0.2	15,000
		학생수련 활동비	3,307,000	0.2	19,000
		급식비	42,477,000	3.0	276,000
		방과후학교 활동비	8,386,000	0.6	52,000
		졸업앨범비	271,000	0.0	1,000
		청소년단체 활동비	789,000	0.0	4,000
		기타수익 부담경비	429,000	0.0	3,000
합계		58,241,000	4	370,000	
4.예비비	1.예비비	예비비	615,000	0.0	4,000
	합계		615,000	0.0	4,000
합 계	세출 총액		1,477,513,000	100.0	9,586,000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는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세출결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다수의 중증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과 관련한 경비를 포함한다. 중증장애학생의 경우 보조 인력의 지원이 학습 참여 및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다. 하지만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학교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 때, 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지원에 관련한 재정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제약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재정은 보조 인력의 인건비 지출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학교는 개별통학이 어려운 장애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반학교에서는 불필요한 차량 관련 소요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실정이다. 통학지원은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과 같이, 장애학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기에 이와 관련한 지출은 특수학교의 경직성 경비에 포함된다. 특수학교의 재정운영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출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요구되며, 특수학교의 재정은 이러한 지출항목에 유의하여 단위학교에 책정·배분되는 것이 공평하다.

셋째, 특수학교는 세출결산에서 수익자부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이는 특수학교가 무상교육원칙에 따라 부가적인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교재정 운영은 국가 정책 및 상급기관의 재정 상황과 관련이 높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배분된 재정만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학교의 경우 이러한 경우 학부모가 부가적 교육비를 부담하여 학교의 정상운영을 가능케 하겠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협소하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수익자부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단위학교의 회계예산과정에서 가용 재정 및 교육과정운영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단위수업의 정상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교수학습활동비가 인건비 및 공통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과다지출과 수익자부담비의 과소지출로 인하여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교육적 편의와 성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재교구의 구입과 교수자료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

에서 이처럼 충분하지 못한 재정은 교수학습활동의 정상화를 어렵게 한다. 장애학생이 수업시간에 충분한 학습지원을 받지 못할 때 교육성취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또한 저하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자료수집의 한계로, 특수학교 재정운영을 세출결산자료만을 대상으로 살펴봄으로써 세입·세출의 예산과 세입·세출의 결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고, 국·공립특수학교로 제한하여 세출결산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특수학교의 재정운영의 현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의 학교회계의 관항목이 2009년의 세출결산을 끝으로 새로운 관항목으로 변경되어 2010년부터는 새로운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 회계를 운영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수학교의 학교재정운영의 특성을 도출하여 일반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이후에는 새로운 회계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 및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정한 특수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 및 재정지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행·재정적 지원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교육지원의 적정수준 및 특수교육의 공정한 목표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지키고 교육과정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학령기의 행복을 지켜주는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은배 외 (2005).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정기국회 보고자료.
 권기욱 (2002). 특수교육학생의 교육재정 공평성 확보를 위한 교육비차이도 추정. **초등특수교육연구**, 4(1), 47-68.
 김남순 (1999). 적정특수교육비 산출연구. **특수교육연구**, 6, 133-150.
 _____ (2004). 장애학생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확보 방안연구. **지방교육경영**, 8(1), 92-116.
 김남순, 김정신 (2007). 학교회계제도 도입과 특수학교경영의 자율화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1(4), 195-213.
 김은주 외 (2002). **한국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연구**. 국립특수교육원.
 김향지 (2000). 특수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5(3), 221-251.
 노선옥 외 (2008). **특수교육실태조사**. 국립특수교육원.
 성삼제 (2002).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신상명 외 (2009). **학교자율경영**. 서울: 원미사
 신진숙 (2005). 정신지체 학생을 둔 부모의 자녀교육 환경별 특수교육서비스 만족도와 요구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235-255.
 이돈희 (1999). **교육정의론**. 서울: 교육과학사
 이윤수 외 (2003). 완전통합교육의 실현 근거와 과제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조사. **조선대 생활지도연구**, 22, 163-185.
 정동영 (2008). 통합학급의 장애학생을 위한 차별화 교수전략 탐색. **지적장애연구**, 10(4), 163-187.
 정희섭 외 (2006). **한국특수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만족도 조사연구**. 국립특수교육원.
 주철안 (1999). 선진 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8(1), 323-361.
 _____ (2004). 초중등교육개혁의 교육재정경제학적 접근. **교육재정경제연구**, 13(2), 259-288.
 주혜영 (2005). 장애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통합교육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최청일 (2000). 교육개혁의 경제학. **동아대학교 동아교육논총**, 26.
 한유경 외 (2002). **한국예산회계제도의 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al Financial
management of National ·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 Focused on school annual expenditure

Min, Yun J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Joo, Chul A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chool finance management of national ·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and public elementary schools which enforce school-based finance policy. School expenditure and school operating expenditure is analysed in component ratio by subcategories.

This research hav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onent ratio. Compared with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school's expenditure is used on more personnel expenditure and operating expenditure, but parents expenditure is very low. And special education school's operating expenditure is used more on general operating expenditure, but less on instructional expenditure and equipment cost.

The 2009 average annual expenditures of national ·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is 1,477,513,000 won, more specifically personnel expenditures is 541,944,000 won, school operating expenditures is 999,324,000 won, parents expenditures is 58,241,000 won and extra fund is 615,000 won.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Finance, School-Based Finance Policy, Cost Differential, Vertical Equity

논문 접수: 2010. 10. 26 심사 시작: 2010. 11. 10 게재 확정: 2010. 12. 15